

#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7971호 (2003. 4. 22) -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 1. 주요골자

- 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함(영 제3조 신설).
- 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 등의 영업종류에 집단급식소(集團給食所)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委託給食營業)을 추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영 제7조제8호마목 신설).
- 다. 수입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하도록 함(영 제13조).
- 라.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

과금액을 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03.4.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p>〈신 설〉</p>	<p><b>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b>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p>
<p>〈신 설〉</p>	<p><b>제3조의2(출입·검사·수거 등)</b>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p>
<p><b>제3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생 략)</b></p>	<p><b>제4조(식품등의 재검사) (현행 제3조의2와</b></p>

현행	개정안
<p><b>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b>  <u>〈신 설〉</u></p> <p>①·② (생략)</p> <p><b>제6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 등)</b>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u>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u>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u>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p> <p>③<u>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u>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시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1.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p>	<p>같음)</p> <p><b>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b>  <u>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u></p> <p>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b>제6조의2(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①</b>-----          ----- <u>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u> -----          -----          -----          -----          -----</p> <p><u>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          -----          -----</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p> <p>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p> <p>3.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p> <p>⑤ (생 략)</p> <p><b>제7조(영업의 종류)</b>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식품첨가물제조업</u> :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중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p> <p>4. (생 략)</p> <p>5. 식품소분·판매업</p> <p>가. (생 략)</p> <p>나. 식품판매업</p> <p>(1) ~ (3) 삭제</p> <p>(4) (생 략)</p> <p>(5) <u>식품자동판매기영업</u> : <u>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u></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7조(영업의 종류)</b> -----</p> <p>-----</p> <p>1. 2. (생 략)</p> <p>3. <u>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u></p> <p>가. <u>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u></p> <p>나. <u>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u></p> <p>다. <u>식품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u></p> <p>라. <u>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u></p> <p>4. (현행과 같음)</p> <p>5.</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4) (현행과 같음)</p> <p>(5) <u>식품자동판매기영업</u> : <u>식품</u>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u>다만, 캔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6) (생 략) (7) 삭 제 (8)·(9) (생 략)</p> <p>6·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 라. (생 략)</p> <p><u>&lt;신 설&gt;</u></p> <p><b>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b></p> <p>1. ~ 3. (생 략)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u>&lt;단서 신설&gt;</u> 5·6. (생 략)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p> <p>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u>도정업 및 제분업</u>을 하는 경우 2. (생 략)</p>	<p><u>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6) (현행과 같음)</p> <p>(8)·(9) (현행과 같음)</p> <p>6·7. (현행과 같음)</p> <p>8.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u></p> <p><b>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b></p> <p>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동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5·6. (현행과 같음)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p> <p>② ----- -----</p> <p>1. ----- <u>도정업</u> -----</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p> <p>4. 5. (생 략)</p> <p><b>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b>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b>&lt;신 설&gt;</b></p> <p>4. ~ 7. (생 략)</p> <p>제17조의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1의2.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2.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3.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p> <p><b>제20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b>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p> <p><b>제24조의2(연구위원등)</b>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3. 주세법 제6조 -----                      -----                      -----</p> <p>4. 5. (현행과 같음)</p> <p><b>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b>                      -----                      -----                      -----</p> <p>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영업장의 면적                      4.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                      -----                      -----</p> <p>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5.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6.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포장류 제조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p> <p><b>제20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b>                      ①-----                      -----                      -----                      ----- 100인 이내 -----                      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24조의2(연구위원등)</b> ①-----                      ----- 20인 이내 -----                      -----</p>

현행	개정안
<p>② ~ ④ (생략)</p> <p><b>제53조(권한의 위임)</b></p> <p>① 삭제</p> <p>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u>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u></p> <p>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u>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53조(권한의 위임)</b></p> <p>② ----- ----- <u>법 제22조</u> ----- -----</p> <p>③ ----- ----- <u>법 제22조</u> ----- ----- ----- <u>법 제65조</u> ----- -----</p>